

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상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및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과 시사점* ‘Digital Only’ and ‘Digital First’ in German Online Access Act and Implications in the Age of Digital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조 인 성**
Cho, In-Sung

목 차

- | | |
|---------------------------------|------------------------------------|
| I. 서론: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의 개정 | V. 독일 주법(Landesrecht) 및 |
| II.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 | 주헌법(Landesverfassungsrecht)상 ‘다중 |
| 1항 제2문: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의 경 | 채널 액세스 의무(Pflicht zum |
| 우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 Mehrkanalzugang)’ |
| III. 다른 개별법률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용 | VI. 시사점: 한국의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
| (digital only)’ | 전용(digital only)’과 ‘디지털 우선(digital |
| IV. ‘디지털 전용’ 의무(‘digital | first)’ |
| only’-Verpflichtungen)의 정당성(기업의 | VII. 결론: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또는 |
| 경우) |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

앞으로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은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에 오로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접근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광범위한

<https://doi.org/10.35148/ilsilr.2024..57.391>

투고일: 2024. 3. 3. / 심사완료일: 2024. 4. 18. / 게재확정일: 2024. 4. 1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A2A01075283)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Prof. Dr. iur.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Hannam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미디어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독일 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조직 고권을 배경으로 이러한 연방법적 요구사항의 헌법적 틀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적 차원과 디지털 접근 채널에 대한 의무의 지배적인 개별법적 형태를 고려하면, 독일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법(GG)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체 솔루션 제공의 헌법적 의무로 인해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원칙이 기본 원칙이 될 것임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다중 채널 접근에 대한 주법상의 의무는 부분적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이에 온라인접근법 개정안 제1a조 제1항 제2문에서도 올바르게 표현(“soll”)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 디지털법 제20조 제1항 제1문에서 전체 주 정부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적합한 행정 절차나 이 중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디지털 행정이 개혁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단계에서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단계로 행정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아직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의 원칙의 명문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 공공행정의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에 그치고 아직도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독일 온라인접근법, 디지털 전용, 미디어 자기결정, 조직 고권, 디지털 우선, 디지털 행정 전환

I. 서론: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의 개정

2023년 5월 24일 독일 연방 내각은 온라인접근법(Gesetz zur Verbesserung des Onlinezugangs zu Verwaltungsleistungen; 약칭 Onlinezugangsgesetz(OZG)) 및 기타 행정의 디지털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 초안(OZG-E)¹⁾을 통과시켰다.²⁾ 그 후 최근에는 2024년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이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³⁾ 온라인접근법의 조항은 독일 공공행정의 현대화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Onlinezugangsgesetzes(OZG) sowie weiterer Vorschriften zu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OZG-Änderungsgesetz – OZGÄndG). BMI,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Onlinezugangsgesetzes sowie weiterer Vorschriften zu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OZG-Änderungsgesetz – OZGÄndG)”, <https://www.bmi.bund.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Downloads/kabinettsfassung/entwurf-gesetz-aenderung-ozg-digitalisierung-verwaltung.html>, 검색일: 2024. 3. 1.

2) BR-Drs. 226/23, BR-Drs. 20/8093 참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디지털화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고, 원래 발효 후 5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었다.⁴⁾ 이는 포털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하는 가장 큰 과제와도 관련이 깊다.⁵⁾ 이러한 법률상 과제들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채 2022년 말에 기한이 만료되었다. 어쨌든 모든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장기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은 관련자 모두에게 분명했으며, 이는 또한 법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3)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사용자 친화적이고 완전한 디지털 처리, 중앙 집중식 시민 계정 도입, 그리고 종이 신청서 폐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온라인 서비스의 도입과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적인 과제로서 디지털화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다. 앞으로 기업은 디지털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중앙집중식 시민 계정인 BundID가 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시민들이 관청에 갈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신청 절차의 도입과 자필 서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은 간소화되고 디지털화된 행정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 요소는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계정인 BundID의 도입이다. 이 계정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민이 두 번 이상 제출할 필요 없이 당국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일회성 원칙(das Once-Only-Prinzip)’이 개정안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조직 계정이 도입된다. 또한 기업용 행정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마감일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번 연방하원의 결정 후에 이 법안은 이제 연방상원(Bundesrat)에 제출되었다. https://www.kommune21.de/meldung_43231_Bundestag+beschlie%C3%9Ft+OZG+2.0.html, 검색일: 2024. 3. 1.; Deutscher Bundestag, “Bundestag beschließt Änderungen am Online-zugangsgesetz”.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4/kw08-de-onlinezugangsgesetz-990686>, 검색일: 2024. 3. 1.

4) 2017년 제정된 온라인접근법(OZG)은 2022년 말까지 독일 연방과 주가 행정서비스(총 575개)를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1항). 국민은 연방과 주의 행정 포털을 도구로 이 서비스에 액세스가 가능해야 하는바, 이러한 행정 포털은 이른바 포털 네트워크에 연계되어야 한다(동법 제1조 제2항).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조인성,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 일감법학 제54호, 2023,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37쪽 참조.

5) Gesetz zur Verbesserung des Onlinezugangs zu Verwaltungsleistungen vom 14.8.2017 (BGBl. 2017 I 3122, 3138); 이 온라인접근법(OZG)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Siegel, “Auf dem Weg zum Portalverbund – Das neue Onlinezugangsgesetz (OZG)”, *DÖV* 2018, S. 185; Schliesky/Hoffmann, “Die Digitalisierung des Föderalismus”, *DÖV* 2018, S. 193; Rüscher, “Der digitale Zugang der Bürger zum Staat durch das Onlinezugangsgesetz”, *DVBl* 2017, S. 1530; Herrmann/Stöber, “Das Onlinezugangsgesetz des Bundes – Wie der Gang zum Amt überflüssig werden soll”, *NVwZ* 2017, S. 1401; Martini/Wiesner, “Art. 91c Abs. 5 GG und das neue Zugangsregime zur digitalen Verwaltung: Quantensprung oder zu kurz gesprungen?”, *ZG* 32, 2017, S. 193; Guckelberger, “Digitalisierung und Föderalismus – auf dem Weg zur digitalen Verwaltung in Deutschland”, *VerwArch* 111 (2020), S. 133; Guckelberger/Starosta, “Die Fortentwicklung des Onlinezugangsgesetzes”, *NVwZ* 2021, S. 1161 (1162 ff.).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은 기한을 삭제하는 것⁶⁾뿐만 아니라 온라인접근법(OZG)과 전자정부법(EGovG)을 조정하여 디지털 행정을 위한 기본 조건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과 전자정부법 개정안(EGovG-E)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싱글 사인 온 원칙(Single-sign-on-Prinzip)’⁷⁾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용자 계정의 상호 운용성 대신, 연방 정부의 중앙 집중식 기본 서비스(사서함이 있는 시민 계정, 소위 BundID)가 사용된다(온라인접근법 개정안 제3조 제1항⁸⁾).

둘째, 앞으로는 포털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 양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온라인접근법 개정안 제9a조 제5항)이 법적 서면 양식 요건을 대체하게 된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의 생성 및 사용에 적용되는 ‘일괄 적용 원칙(‘Einer-für-Alle’-Prinzip; EfA-Prinzip⁹⁾)’을 데이터 보호법적 차원에서도 적용하여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재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모든 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

6) BR-Drs. 226/23, S. 34 f.

7) ‘통합 인증(영어: Single Sign-On; SSO)’은 한 번의 인증 과정으로 여러 컴퓨터 상의 자원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증 기능이다. ‘싱글 사인온’, ‘단일 계정 로그인’, ‘단일 인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컴퓨터에 로그인한 후 그룹웨어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또 로그인, 다른 서버상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다시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여러 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한다. 통합인증을 도입한 환경에서는 사용자는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위키백과, “통합 인증(영어: Single Sign-On; SSO)”, <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D%95%A9_%EC%9D%B8%EC%A6%9D>, 검색일: 2024. 3. 1.

8)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3조 제1항

(1) 연방 정부는 포털 네트워크에서 중앙 집중식 시민 계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포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신을 통일되게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다. 시민 계정의 일부는 사용자가 포털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공기관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서함이다. 시민 계정의 사용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포털 네트워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시민 계정에 연결해야 한다. 그 밖에 주 정부 소유의 시민 계정은 포털 네트워크에서 승인되지 않는다.

9) ‘EfA 원칙’은 디지털화된 서비스 사용의 기초가 된다. 모든 주는 다른 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간, 리소스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fA의 기본 사고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새로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분업을 통해 다른 주 정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가 이미 주택 급여 신청서를 디지털화했다면, B주는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디지털화할 필요 없이 A주의 솔루션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MI, “EfA-Prinzip”, <<https://www.digitale-verwaltung.de/Webs/DV/DE/onlinezugangsgesetz/efa/efa-node.html>>, 검색일: 2024. 3. 1.

10) 공공 조달법 차원의 ‘일괄 적용 원칙(‘Einer-für-Alle’-Prinzip; EfA-Prinzip)’에 관해서는 Schulz,

는 주 정부의 데이터 보호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넷째, ‘일회성 원칙(once-only principle)’¹¹⁾을 적용하는 것은 전자정부법(EGovG) 제5조를 개정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즉, 어떤 신청에 대한 증거는, 법적 프레임워크¹²⁾ 및 실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한도에서,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 및 등록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른바 ‘등록 현대화(Registermodernisierung)’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전자정부법 개정안(OZG-E) 제6조에 따르면, 연방 정부에게는 향후 몇 년 내에 강제로 ‘엔드 투 엔드(Ende-zu-Ende) 디지털화’¹³⁾해야 하는 필수 행정서비스(연방법의 시행)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프런트 엔드(Front-end)’ 후에 행정에서도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되는 소위 ‘백 엔드(Back-end)’도 이제부터는 디지털화되어야 한다고 한다.¹⁴⁾

그런데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에는 늦어도 5년 후에는 기업(비즈니스) 서비스(경제의 법 분야에 대한 연방법의 집행)를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법적 계획은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보완되고 있다.¹⁵⁾ 여기에는 ‘일괄 적용(EfA)’ 서비스의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표준화 의제, 다른 행정 영역에 대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또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으로의 전환 검토, 그리고

VergabeR 2021, S. 544 ff.

11) ‘일회성 원칙(once-only principle)’은 시민, 기관, 기업이 특정 표준 정보를 행정기관에 한 번만 제공하면 되는 전자정부 개념이다. 데이터 보호 규정과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합함으로써 공공 행정기관은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일회성 원칙은 시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디지털 단일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의 일환이다. Wikipedia, “Once-only principle”. <https://en.wikipedia.org/wiki/Once-only_principle>, 검색일: 2024. 3. 1.

12) 등록 현대화법(Registermodernisierungsgesetz)에 대해서는 Knauff/Lehmann, “Das Registermodernisierungsgesetz”, *DÖV* 2022, S. 159 ff.

13) 실제로 ‘엔드 투 엔드 디지털화(Ende-zu-Ende-Digitalisierung)’란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에서 디지털화가 시작되고 데이터가 처리되는 곳에서 디지털화가 끝나야 함을 의미한다. 이 프로세스가 매우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최적의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Init, “Ende-zu-Ende-Plattformen und OZG 2.0”. <<https://www.init.de/thema/ende-zu-ende-plattformen-und-onlinezugangsgesetz>>, 검색일: 2024. 3. 1.

14)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조인성, 앞의 논문, 339쪽 참조.

15) BMI, “Eckpunkte für eine moderne und zukunftsgerichtete Verwaltung”, <<https://beck-link.de/7ct23>>, 검색일: 2024. 3. 1.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에 포함된 개정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방 정부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주 정부의 조직 고권에 관여하는 분야만 다루고 있다. 법률로 규제할 수 없거나 재정적 및 법적 이유(기본법(GG) 제91c조¹⁶⁾)에 따른 예산 유보 및 법적 프레임워크)로 인해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무엇보다 추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반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향후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은 기업(비즈니스) 관련 행정 서비스에 오로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접근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디지털 전용(digital only)¹⁷⁾ 원칙이 이 법(OZG)에 명시되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일 것이다. 본 논문은, 한편으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매체 자기결정(mediale Selbstbestimmung)’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배경으로, 다른 한편으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Landes-und Kommunalverwaltung)이 갖고 있는 조직고권(Organisationshoheit)을 배경으로, 독일 연방법(Bundesrecht)에서 사전에 정해둔 원칙이나 기준들에 내포된 헌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첫째,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업(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의 문제(II.), 둘째, 다른 법률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의 문제(III.), 셋째,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의무의 정당성(기업의 경우)의 문제(IV.), 넷째, 주법 및 주 헌법상 ‘다중 채널 액세스

16) 기본법(GG) 제91c조(정보기술 시스템)

- ① 연방과 주는 임무충족에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 설치 및 운영 시에 협력할 수 있다.
- ② 연방과 주는 정보기술 시스템 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조건을 협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력의 근거에 관한 협정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된 임무를 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연방과 주의 협정에서 규정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는 연방의회와 관계 주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정을 해지할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 ③ 주는 이외에도 공동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여기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연방과 주의 정보기술 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 연결망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참의회(Bundesrat)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⑤ 연방과 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체 정보기술 접근은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참의회(Bundesrat)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91c.html>, 검색일: 2024. 3. 1.

- 17) 디지털 행정에서의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란 전화 또는 대면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온라인 포털 등 디지털 방식의 채널만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의 문제(V.),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VI.) 등에 관하여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¹⁸⁾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각각 고찰하려고 한다.

II.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행정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존의 의무¹⁹⁾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의 법 분야에서 연방법의 집행을 지원하고 제2조 제4항 2, 3호(법인 및 협회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한)의 의미 내에서 오로지 사용자와만 관련된 행정서비스는 늦어도 이 법이 공포된 후 5년이 되는 해 말까지 전자적 수단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용은 법률상 의무가 되었다.

규범 체계적인 관점에서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1문과 제2문의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항의 수범자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관련성이 있다(아래 참조). 따라서 기업의 의무는 명시적인 법적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이 해당 절차를 사실적으로 구성한 데서 비롯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규율 논리는 입법자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의 절차적 재량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전용(digital only)’(행정 접근의 제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허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맥락(예컨대 행정법원법(VwGO) 제55d조²¹⁾)에서와 같이, 사용자를 수범자로 하여

18) Schulz, „Digital only “und „digital first “im Onlinezugangsgesetz”, *RD* 2023, S. 518 ff.

19) 2017년 제정된 온라인접근법(OZG) 제1조 제2항

(2)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행정 포털을 연결하여 포털 네트워크를 형성할 의무가 있다. bmj, “OZG”, <https://www.gesetze-im-internet.de/ozg/_1.html>, 검색일: 2024. 3. 1.

20) 현행 법적 상황에 따른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1문 참조.

21)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55d조 (변호사, 행정청 및 대리인의 사용 의무)

변호사,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를 포함)이 변론 준비서면

그 사용자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런 다음 이러한 의무는 헌법, 특히 기본권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전용’의 주장(Anspruch ‘digital only’)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된다. 첫째, 디지털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기속재량, gebundenes Ermessen), 개별 사안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줄(Soll) 조항(Soll-Vorschrift)’을 둔 것을 보면, 디지털 전용의 요구를 제한한 것은 적절해 보이며 헌법상 이유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제3문(“사용자의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 des Nutzers)”)에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여러 조치들의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 이유 자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속재량(gebundenes Ermessen)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der einzige legitime Grund)’가 될 수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규율 방식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²³⁾

두 번째 제한은, 규범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적 통지문 전달이 반드시 ‘디지털 의무(Digitalpflicht)’ ‘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입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온라인접근법(OZG) 제9조에 따라 조직 계정의 사서함을 통한 전자적 통지문의 제공은 개별 사례에서 여전히 종이 기반 통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고객의 경우 옵트 아웃(Opt-Out) 설계를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다.²⁴⁾

과 그 부속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는 전자 문서로 전송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제55a조제4항제1문제2호에 따라 안전한 전송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기술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조항에 따라 전송이 허용된다. 일시적 불가능성은 대체 제출 시 또는 그 직후에 입증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전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mj, “VwGO”,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go/_55d.html>, 검색일: 2024. 3. 1.

22)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fWZ* 2022, S. 1247 (1248)에서도 이러한 규율 접근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즉, 디지털 액세스가 행정청에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예컨대 연방 전자정부법(EGovG)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민들도 이를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 금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23) BR-Drs. 226/23, S. 34: 이는 법적 규정 또는 경제적 또는 사실상 디지털 처리의 불가능이 방해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외모가 꼭 필요한 경우이다.

24) BR-Drs. 226/23, S. 34.

따라서 사실 완전히 디지털화된 행정 절차는 가능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 다른 개별법률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의 특별한 특징은 행정 영역에 완전히 적용되고 추상적으로만 제한되는 반면, 이전의 디지털 전용 의무는 법률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접근 옵션의 사실상의 축소를 통해서도 개별적 행정 절차²⁵⁾ 또는 전문적 사용자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전술한 행정법원법(VwGO) 제 55d조²⁶⁾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 법적 의무 외에도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적 신청은 행정 수수료 절감이나 또는 행정 절차의 단축을 약속하고 있다.²⁷⁾ 미래에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전자정부를 향해 시민들을 낚시²⁸⁾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기존의 사용 인센티브는 행정청과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다중 채널 원칙(Multikanalprinzip)’은 법적 및 사실적 상황을 계속 특징짓는 요소이다.³⁰⁾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도시 토지 이용 계획 절차에서 디지털화 강화법(Gesetz zur Stärkung der Digitalisierung im Bauleitplanverfahren)³¹⁾에서 전자적 참여 절차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의 관점과 법적 통일성의 이익에서 볼 때, 예컨대 행정절차법(VwVfG)을 개정하는 등 일반 조항을 통해

25) 채무자 등록부의 배타적인 전자적 열람에 관해서는 Schulz, “Der elektronische Zugang zur Verwaltung”, *RDV* 2021, S. 377 (381).

26)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55d조 (변호사, 행정청 및 대리인의 사용 의무) 참조.

27) Schulz/Hoffmann/Tallich, “Anreizsysteme und Instrumente zur Nutzen- und Nutzersteigerung im E-Government”, *Die Verwaltung* 45 (2012), S. 207 (225 ff.); 예를 들어, 인터넷 차량 등록(‘iKfz’)에 관한 도로교통 수수료 규정(Straßenverkehrsgebührenordnung; GebOST)을 들 수 있다.

28)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뜻의 낚시(Nudge)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개입, 혹은 간섭이다. 즉,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29)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1248).

30)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1248).

31) BGBl. 2023 I 176, 1.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원칙(디지털 전용이 아닌 디지털 우선)으로 할 때가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법 영역 또는 행정 절차만 선택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사전 신고서³²⁾의 전자적 제출, 정보기술(IT) 지식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온라인 지원³³⁾ 또는 전자적 조달(E-Vergabe)³⁴⁾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방식이 사용 되어왔다. 현재 대다수의 인구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수단이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이다(아래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입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기업(비즈니스) 행정 고객의 디지털 친화성이 높고 기업(비즈니스) 행정 서비스가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기업(비즈니스) 맥락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액세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³⁵⁾고 한다.

IV. ‘디지털 전용’ 의무(‘digital only’-Verpflichtungen)의 정당성(기업의 경우)

이는 이러한 가정이 특정 채널에 대한 의무의 헌법적 정당화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영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직접 연결된다. 입법 이유는 법률 자체가 연방 및 주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기본권 측면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축소되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고려

32)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제18조 제1항,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제41조 제1항 제2문.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제150조 제8항의 예외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Bundesfinanzhof(BFH), “Unzumutbarkeit der Pflicht zur elektronischen Übermittlung der Steuererklärung”, *NJW* 2020, S. 3743 mAnm Mauer, “Wirtschaftliche Unzumutbarkeit der elektronischen Abgabe einer Einkommensteuererklärung”, *RDf* 2020, S. 104.

33) Hartmann/Nöllenburg, “Die elektronische Bewerbung im öffentlichen Dienst”, *ZBR* 2007, S. 242 (244).

34) Schröder, “Rahmenbedingungen de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VerwArch* 2019, S. 328 (336).

35) BR-Drs. 226/23, S. 34.

하고 있다. 독일 주들의 의무만을 기본법(GG)의 권한 규정과 비교하여 측정해야 한다면, 이는 아마도 기본법(GG) 제83조³⁶⁾ 이하에 의해 연방법의 집행에서 보장되는 주들의 조직 고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연방 정부를 통한 실제적 입법의 틀 내에서 절차적 요건은 가능하지만, 연방 정부가 주들의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³⁷⁾ 이러한 규정은 즉, 연방 정부의 행정절차법(VwVfG) 제1조 제3항³⁸⁾의 진술 및 행정청에 의한 집행은 오직 하나의 절차법, 즉, 각 주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일적으로만 규율되어야 한다는 이 조항의 선언된 목적과 영구적으로 모순된다(본질적으로 이 사고는 아마도 기본법(GG) 제83조 이하에서도 보장되고 있을 것임). 온라인접근법(OZG) 및 예를 들어 연방 전자정부법(EGovG Bund)으로 연방법의 전자적 집행을 위한 병행 절차법이 제정된 것이다. 기본법(GG) 제74조 제1항 제11호³⁹⁾에 따른 경제의 법에 관한 입법 권한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는 경제의 이익(예컨대 전국적으로 통일된 – 실제적 – 법적 틀)을 다룰 수 있지만, 주 행정의 효율성 또는 주 행정에 유리한 재정적 효과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주들에 부과되는 의무는 디지털 행정 절차의 경제 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 관점들로는 전자적 절차의 높은 프로세스 품질, 빠른 의사 결정, 전반적인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사용자의 디지털 채널 사용 의무는 주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다중 채널 접속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발생하며,⁴⁰⁾ 이는 기본권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가, 디지털 문맹자를 위한 대체 솔루션이 존재하는 한, 허용된

36) 기본법(GG) 제83조 (주 정부의 고유행정의 원칙)

주 정부는 이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연방법을 그 고유의 사무로 집행한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83.html>, 검색일: 2024. 3. 1.

37) 독일 연방 전자정부법(EGovG Bund)에 관해서는 Lühr/Jabkowski/Smentek, Handbuch Digitale Verwaltung/Schulz, 2019, S. 159 (170 f.).

38) 행정절차법(VwVfG) 제1조 제3항

(3) 이 법은, 공법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 활동이 주법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 규제되는 한, 주를 통한 연방법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mj, “VwVfG”,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vfg/_1.html>, 검색일: 2024. 3. 1.

39) 기본법(GG) 제74조 제1항 제11호

경제(광업, 산업, 에너지,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 제도, 사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법(상점 폐쇄, 식당, 오락실, 사람 전시, 무역 박람회, 전시회 및 시장에 관한 법 제외)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74.html>, 검색일: 2024. 3. 1.

40) Lucke, *Hochleistungsportale für die öffentliche Verwaltung*, 2008, S. 63 ff.

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⁴¹⁾ 일반적 행동의 자유(기본법(GG) 제2조 제1항⁴²⁾)와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2조 제1항)도 직업 및 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제1항,⁴³⁾ 제14조 제1항⁴⁴⁾)도 여기서 절대적인 보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일반적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⁴⁵⁾)도 기껏해야 구체적인 형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아래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종종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논쟁을 고려할 때, 정보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디지털 절차 및 데이터의 연결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특히 일회성(*once only*))이 행정 절차의 결정적 설계 원칙으로 격상된 경우, 정보 자기결정권은 모든 온라인 데이터 처리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아날로그 접근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Generelles Recht auf analogen Zugang*)를 제공하지는 않는다.⁴⁶⁾ 오히려 오로지 디지털 행정 액세스만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데이터 처리의 목적이 부문별로 정확하게 결정되고 데이터가 이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⁷⁾

디지털 행정 절차의 사용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및 기타 전제 조건이 전반적으로

41) Schulz, “Der elektronische Zugang zur Verwaltung: Zum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Grundrecht auf mediale Selbstbestimmung und verpflichtendem E-Government”, *RD* 2021, S. 377;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42) 기본법(GG) 제2조(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사람의 자유) 제1항 (1)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도덕률이나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2.html>, 검색일: 2024. 3. 1.

43) 기본법(GG) 제12조(직업의 자유) 제1항 (1) 모든 독일인은 직장, 직업 그리고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 있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2.html>, 검색일: 2024. 3. 1.

44) 기본법(GG)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제1항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4.html>, 검색일: 2024. 3. 1.

45) 기본법(GG) 제3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제1항 (1)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3.html>, 검색일: 2024. 3. 1.

46)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1250); Bull, “Zweifelsfragen um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Datenschutz als Datenaskese?”, *NJW* 2006, S. 1617 (1619).

47)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1250).

또는 최소한 해당 일부 영역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어떤 의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 기업(또는 온라인접근법(OZG) 제2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명시된 사용자 그룹)의 경우에 해당한다. 인프라, 특히 사용자 측의 역량 요건은 여기에서 가정할 수 있다(이는 세법상의 기존 디지털 의무에 의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디지털 접근 가능성에 대한 뷔르츠부르크 행정재판소(VG Würzburg) 및 뮌헨 행정재판소(VGH München)의 논리는 (전자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지원의 맥락에서) 기업들에게도 더욱 적용될 수 있다. 즉,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원고는 지인, 공공 및 사설 무선랜 핫스팟 또는 인터넷 카페의 인터넷 접속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액세스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한다.⁴⁹⁾

V. 독일 주법(Landesrecht) 및 주헌법(Landesverfassungsrecht)상 ‘다중 채널 액세스 의무(Pflicht zum Mehrkanalzugang)’

전술한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의 조항을 중시하게 되면, 독일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향후에 전자적 서비스 외에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아날로그 방식의 절차를 제공하는데 방해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이러한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 보인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관점에서든 헌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날로그 접근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체 인프라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온라인접근법 개정안

48) BeckRS 2020, 32753, Elektronische Antragstellung für Finanzhilfen, Rn. 5, “VGH München (6. Senat), Beschluss vom 11.11.2020 – 6 CE 20.2428”,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ents%2Fbeckrs%2F2020%2Fcont%2Fbeckrs.2020.32753.htm&anchor=Y-300-Z-BECKRS-B-2020-N-32753-RN-5>, 검색일: 2024. 3. 1.; BeckRS 2020, 16365, Corona-Soforthilfe für freischaffende Künstler, Rn. 27, “VG Würzburg (8. Kammer), Beschluss vom 13.07.2020 – W 8 E 20.815”,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ents%2Fbeckrs%2F2020%2Fcont%2Fbeckrs.2020.16365.htm&anchor=Y-300-Z-BECKRS-B-2020-N-16365-RN-27>, 검색일: 2024. 3. 1.

49) VG Würzburg BeckRS 2020, 16365 Rn. 32.

(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은 ‘다중 채널 액세스(Mehrkanalzugang)’에 대한 주법상의 의무를 법적으로(배타적 전자 액세스에 대한 연방법상의 의무는 기본법(GG) 제31조⁵⁰⁾에 따르면 달리 작동되는 주법상의 규정에 우선한다) 또는 사실상 공허하게 한다. 이는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12조 제1항 제3문⁵¹⁾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쉘레스비히 홀스타인주 헌법(LV SH) 제14조 제2항 제2문⁵²⁾의 개별 헌법상 평등 대우 원칙에도 적용된다.⁵³⁾

VI. 시사점: 한국의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digital only)’과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우리나라 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⁵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정보·서비스만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 국민·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 가치를 만들어 낼

50) 기본법(GG) 제31조 [연방법의 우선성]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31.html>, 검색일: 2024. 3. 1.

51)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12조 제1항 제3문

비디지털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bmj, “Art. 12 Rechte in der digitalen Verwaltung, BayDiG”,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baydig%2Fcont%2Fbaydig.a12.htm&anchor=Y-100-G-BAYDIG-A-12-X-1>, 검색일: 2024. 3. 1.

52) 쉘레스비히 홀스타인주 헌법(LV SH) 제14조 제2항 제2문

누구도 접근 방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beck-online, “Artikel 14 Digitale Basisdienste, Zugang zu Behörden und Gerichten LV SH”,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shverf%2Fcont%2Fshverf.a14.htm&anchor=Y-100-G-SHVERF-A-14-X-2>, 검색일: 2024. 3. 1.

53) 쉘레스비히 홀스타인주 헌법(LV SH) 제14조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Schulz/Hoffmann, “Schleswig-Holsteins digitale Verfassung”, *NordÖR* 2016, S. 389; Botta,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IwZ* 2022, S. 1247 (1252); 조인성, 앞의 논문, 337쪽 참조.

54) 2022년 9월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① 디지털플랫폼 혁신 인프라 구현, ②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③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을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디지털플랫폼정부”, <<https://www.krihs.re.kr/publica/bbsView.es?pageIndex=1&num=1013&serlno=1>>, 검색일: 2024. 3. 1.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정운영의 새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한다.⁵⁵⁾ 행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DX)⁵⁶⁾은 국민·기업에 행정 서비스를 할 때 디지털 채널과 도구를 우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⁵⁷⁾ 서비스라 방식이 아니라 전화 또는 대면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온라인 포털 등 디지털 방식의 채널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까지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 허용 가능성과 한계의 문제에 관한 최근 독일에서의 헌법적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주적 법치·사회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입법정책 실현에 쓸모 있는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아무튼 공공행정의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와 특히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에서는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적 허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전자적 행정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통례로 제공되는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국가를 지향하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 경우 전자정부를 이용해야 할 의무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될지도 모른다.

요컨대 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디지털 행정이 개혁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55)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특징”, <https://dpg.go.kr/DPG/contents/DPG0302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schBdcode=&schGroupCode=&id=20230413210827705607>, 검색일: 2024. 3. 1.

56)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하여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DX)이라고도 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느끼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핵심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기업 경영에서 디지털과 데이터는 없어서는 안 될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엘리스,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사례 3가지”, <<https://elice.io/newsroom/3-cases-of-digital-transformation-on-public-institutions>>, 검색일: 2024. 3. 1.

57) 디지털 행정에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란 시민이나 기업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채널과 도구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말한다.

말해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 단계에서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 단계로 행정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아직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평등원칙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그 한계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서면 신청 가능성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행정 액세스하는 것은 마땅히 꼭 필요한 기술 설비를 갖지 못한 국민이 디지털 방식의 접근에 익숙한 국민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20조 제1항 제1문⁵⁸⁾에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의 근거를 삼았음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제3문⁵⁹⁾을 통해 ‘비디지털 절차수행권’을 계속해서 명시했다고 한다.⁶⁰⁾ 뷔르츠부르크 행정재판소(VG Würzburg) 및 뮌헨 행정재판소(VGH München)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만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⁶¹⁾ 원고는 지인의 인터넷 액세스, 공공·사설 랜(WLAN) 핫스팟 또는 인터넷 카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디지털 접근 가능성을 언급했다.⁶²⁾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7조⁶³⁾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58)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20조(원칙적으로 디지털 절차) 제1항 제1문

(1) 국가의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행정 절차 또는 그 중 분리 가능한 부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beck-online, “Art. 20 Digitale Verfahren als Regelfall, BayDIG”,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baydig%2Fcont%2Fbaydig.a20.htm&anchor=Y-100-G-BAYDIG-A-20>, 검색일: 2024. 3. 1.

59)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12조 제1항 제3문 참조.

60) 조인성, 앞의 논문, 351쪽.

61) VGH München 11.11.2020 – 6 CE 20.2428, BeckRS 2020, 32753 Rn. 5; VG Würzburg 13.7.2020 – 8 E 20.815, BeckRS 2020, 16365 Rn. 27.

62) VG Würzburg 13.7.2020 – 8 E 20.815, BeckRS 2020, 16365 Rn. 32.

63)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 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처리의 원칙의 명문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 공공행정의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에 그치고 아직도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만 신청 등을 하게 한 경우, 헌법상의 해당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의 요지는 행정 절차의 사용자 친화적이고 완전한 디지털 처리, 중앙 집중식 시민 계정(BundID) 도입, 그리고 종이 신청서 폐지를 들 수 있다. 표준화된 온라인 서비스의 도입과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적인 과제로서 디지털화의 법적 근거가 포함하고, 앞으로 기업은 디지털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을 위한 중앙집중식 시민 계정(BundID)을 도입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 개정안은 시민들이 관청에 갈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신청 절차의 도입과 자필 서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은 간소화되고 디지털화된 행정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 시민 계정(BundID)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민이 두 번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청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일회성 원칙(das Once-Only-Prinzip)’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조직 계정이 도입되고, 또한 기업용 행정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마감일을 설정한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또는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요컨대 헌법적 차원과 디지털 접근 채널에 대한 의무(Verpflichtungen auf den digitalen Zugangskanal)의 지배적인 개별법적 형태를 고려하면, 독일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법(GG)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체 솔루션 제공의 헌법적 의무(Pflicht zu Auffanglösungen)로 인해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원칙이 기본 원칙이 될 것임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다중 채널 접근에 대한 주법상의 의무(die landesrechtlichen Verpflichtungen zum Mehrkanalzugang)는 부분적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이는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 제1a조 제1항 제2문에서도 올바르게 표현(“soll”)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전술한 바이에른주 디지털 법(BayDiG) 제20조 제1항 제1문⁶⁴⁾에서 전체 주정부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행정 절차 또는 그 중 분리 가능한 부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선택에 대한 헌법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떤 이유로든 인터넷 사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대체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법치국가적 의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관적 권리로 구체화 된다. 과거에는 기록을 위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옵션이 이미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행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행정기관은 앞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접근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읽고 쓸 수 있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지원서, 즉 전자 양식을 추천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다만 각 사용자 그룹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일부 적용 분야(예컨대

64) 바이에른주 디지털법(BayDiG) 제12조 제1항 제3문 참조.

노인과 같은 ‘일반 시민’)에는 예외가 많으나 다른 적용 분야(‘전문 사용자 및 기업’)에는 예외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원칙의 동등한 적용이라는 가정은 특정 규정을 자제하고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원칙을 일반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한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접근법 개정안(OZG-E)에는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VwVfG)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행정 절차의 절차법적 우선순위의 예와 온라인접근법(OZG) 및 전자정부법(EGovG)에서 디지털 행정 절차에 대한 병행 절차법의 생성의 예를 살펴보면 행정절차법(VwVfG)의 시의적절한 추가 발전이 입법자에 의해 훨씬 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연방 입법자는 기본법(GG) 제91c조 제5항의 입법 권한에 근거한 온라인접근법(OZG)을 통해 디지털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행정 절차 권한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어떤 규정의 대상이 연방 및 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 기술적 접근(기본법(GG) 제91c조 제5항의 문언에 따름)에 속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은 없다. 575개의 행정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말에 시행 기간이 종료되는 온라인접근법(OZG)의 업데이트를 둘러싼 논쟁은 특히 하나의 법률에 절차법적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디지털화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방 권한이 없는 경우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제쳐두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전자정부법(EGovG) 및 온라인접근법(OZG)의 절차법적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주법의 동시 입법을 기반으로 연방 행정절차법(VwVfG)을 공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모든 기본 원칙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디지털 시대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⁶⁵⁾ 이 경우 무엇보다도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주장은 법적으로 표현되고 보장될 수도 있다.

65) Thorsten Siegel, “Digital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Reformbedarf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VwZ* 2023, S. 193 (201).

참고문헌

1. 단행본

- Lucke, *Hochleistungsportale für die öffentliche Verwaltung*, 2008, S. 63 ff.
Lühr/Jabkowski/Smentek, *Handbuch Digitale Verwaltung*/Schulz, 2019, S. 159 ff.
Schulz, *VergabeR* 2021, S. 544 ff.

2. 학술지

- 조인성,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 일감법학 제54호, 건국대 법학연구소, 2023, 333쪽-363쪽.
- Botta, Jonas, “„Digital First “und „Digital Only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VwZ* 2022, S. 1247 ff.
- Bull, Hans Peter, “Zweifelsfragen um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Datenschutz als Datenaskese?”, *NJW* 2006, S. 1617 ff.
- Bundesfinanzhof(BFH), “Unzumutbarkeit der Pflicht zur elektronischen Übermittlung der Steuererklärung”, *NJW* 2020, S. 3743 ff.
- Guckelberger, Annette/Starosta, Gina, “Die Fortentwicklung des Onlinezugangsgesetzes”, *NVwZ* 2021, S. 1161 ff.
- Guckelberger, Annette, “Digitalisierung und Föderalismus – auf dem Weg zur digitalen Verwaltung in Deutschland”, *VerwArch* 111 (2020), S. 133 ff.
- Hartmann, B.J./Nöllenburg, N., “Die elektronische Bewerbung im öffentlichen Dienst”, *ZBR* 2007, S. 242 ff.
- Herrmann, Marco/Stöber, Karlheinz, “Das Onlinezugangsgesetz des Bundes - Wie der Gang zum Amt überflüssig werden soll”, *NVwZ* 2017, S. 1401 ff.
- Knauff/Lehmann, “Das Registermodernisierungsgesetz”, *DÖV* 2022, S. 159 ff.
- Martini, Mario/Wiesner, Cornelius, “Art. 9lc Abs. 5 GG und das neue Zugangsregime zur digitalen Verwaltung: Quantensprung oder zu kurz gesprungen?”, *ZG* 32, 2017, S. 193 ff.
- Mauer, Karl, “Wirtschaftliche Unzumutbarkeit der elektronischen Abgabe einer Einkommensteuererklärung”, *RDt* 2020, S. 104.

- Rüscher, Daniel, “Der digitale Zugang der Bürger zum Staat durch das Onlinezugangsgesetz”, *DVBl* 2017, S. 1530 ff.
- Schliesky, Utz/Hoffmann, Christian, “Die Digitalisierung des Föderalismus - Der Portalverbund gem. Art. 91c Abs. 5 GG als Rettung des E-Government?”, *DÖV* 2018, S. 193 ff.
- Schröder, Meinhard, “Rahmenbedingungen de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VerwArch* 2019, S. 328 ff.
- Schulz, Sönke E., “„Digital only “und „digital first “im Onlinezugangsgesetz”, *RDİ* 2023, 518 ff.
- Schulz, Sönke E/Hoffmann, Christian/Tallich, Maximilian, “Anreizsysteme und Instrumente zur Nutzen- und Nutzersteigerung im E-Government”, *Die Verwaltung* 45 (2012), S. 207 ff.
- Schulz, Christian/Hoffmann, Sönke E., “Schleswig-Holsteins digitale Verfassung”, *NordÖR* 2016, S. 389 ff.
- Siegel, Thorsten, “Digital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Reformbedarf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VwZ* 2023, S. 193 ff.
- Siegel, Thorsten, “Auf dem Weg zum Portalverbund – Das neue Onlinezugangsgesetz (OZG)”, *DÖV* 2018, S. 185 ff.
- Sönke E. Schulz, “Der elektronische Zugang zur Verwaltung: Zum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Grundrecht auf mediale Selbstbestimmung und verpflichtendem E-Government”, *RDİ* 2021, S. 377 ff.

3. 웹사이트

- 국토연구원, “디지털플랫폼정부”, <<https://www.krihs.re.kr/publica/bbsView.es?pageIndex=1&num=1013&serlno=1>>, 검색일: 2024. 3. 1.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특징”, <https://dpg.go.kr/DPG/contents/DPG0302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schBdcode=&schGroupCode=&id=20230413210827705607>, 검색일: 2024. 3. 1.
- 엘리스,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사례 3가지”, <<https://elice.io/newsroom/3-cases-of-digital->

- transformation-on-public-institutions>, 검색일: 2024. 3. 1.
- 위키백과, “통합 인증(영어: Single Sign-On; SSO)”, <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D%95%A9_%EC%9D%B8%EC%A6%9D>, 검색일: 2024. 3. 1.
- beck-online, “Artikel 14 Digitale Basisdienste, Zugang zu Behörden und Gerichten LV SH”,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shverf%2Fcont%2Fshverf.a14.htm&anchor=Y-100-G-SHVERF-A-14-X-2>, 검색일: 2024. 3. 1.
- beck-online, “Art. 20 Digitale Verfahren als Regelfall, BayDIG”,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baydig%2Fcont%2Fbaydig.a20.htm&anchor=Y-100-G-BAYDIG-A-20>, 검색일: 2024. 3. 1.
- BeckRS 2020, 32753, “VGH München (6. Senat), Beschluss vom 11.11.2020 – 6 CE 20.2428”,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ents%2Fbeckrs%2F2020%2Fcont%2Fbeckrs.2020.32753.htm&anchor=Y-300-Z-BECKRS-B-2020-N-32753-RN-5>, 검색일: 2024. 3. 1.
- BeckRS 2020, 16365, “VG Würzburg (8. Kammer), Beschluss vom 13.07.2020 – W 8 E 20.815”,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ents%2Fbeckrs%2F2020%2Fcont%2Fbeckrs.2020.16365.htm&anchor=Y-300-Z-BECKRS-B-2020-N-16365-RN-27>, 검색일: 2024. 3. 1.
- BMI,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Onlinezugangsgesetzes sowie weiterer Vorschriften zu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OZG-Änderungsgesetz – OZGÄndG)”, <https://www.bmi.bund.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Downloads/kabinettsfassung/entwurf-gesetz-aenderung-ozg-digitalisierung-verwaltung.html>, 검색일: 2024. 3. 1.
- BMI, “Efa-Prinzip”, <<https://www.digitale-verwaltung.de/Webs/DV/DE/onlinezugangsgesetz/efa/efa-node.html>>, 검색일: 2024. 3. 1.
- BMI, “Eckpunkte für eine moderne und zukunftsgerichtete Verwaltung”, <<https://beck-link.de/7ct23>>,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91c.html>, 검색일: 2024. 3. 1.
- bmj, “OZG”, <https://www.gesetze-im-internet.de/ozg/_1.html>, 검색일: 2024. 3. 1.
- bmj, “VwGO”,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go/_55d.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83.html>, 검색일: 2024. 3. 1.

- bmj, “VwVfG”,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vfg/_1.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74.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2.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4.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3.html>, 검색일: 2024. 3. 1.
- bmj,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31.html>, 검색일: 2024. 3. 1.
- bmj, “Art. 12 Rechte in der digitalen Verwaltung, BayDiG”,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vpath=bibdata%2Fges%2Fbaydig%2Fcont%2Fbaydig.a12.htm&anchor=Y-100-G-BAYDIG-A-12-X-1>, 검색일: 2024. 3. 1.
- Deutscher Bundestag, “Bundestag beschließt Änderungen am Online-zugangsgesetz”.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4/kw08-de-onlinezugangsgesetz-990686>>. 검색일: 2024. 3. 1.
- Init, “Ende-zu-Ende-Plattformen und OZG 2.0”. <<https://www.init.de/thema/ende-zu-ende-plattformen-und-onlinezugangsgesetz>>, 검색일: 2024. 3. 1.
- kommune21, “Bundestag beschließt OZG 2.0”, <https://www.kommune21.de/meldung_43231_Bundestag+beschlie%C3%9Ft+OZG+2.0.html>, 검색일: 2024. 3. 1.
- Wikipedia, “Once-only principle”. <https://en.wikipedia.org/wiki/Once-only_principle>, 검색일: 2024. 3. 1.

[Abstract]

‘Digital Only’ and ‘Digital First’ in German Online Access Act and Implications in the Age of Digital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Cho, In-Sung*

In the future, German Online Access Act will require exclusively digital access to company-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digital only’ principle has been legally enshrined with a broad scope of applic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emand for media self-determination of citizens and companies, but also the organizational authority of the executiv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such federal requirements should be analyzed.

If one considers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as well as the predominant formulation of obligations to the ‘digital access channel’ in Specific Act, it becomes clear - and thus the state law obligations to ‘multi-channel access’ are only partially empty - that there can be no strictly applied ‘digital only’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but that the principle of ‘digital first’ will be the guiding principle due to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vide fall-back solutions resulting from Article 3, paragraph 1 GG(German Constitution). This is also correctly expressed in Article 1a paragraph 1 sentence 2 OZG-E (“solll”) and is laid down across the board for the entire state administration, for example in Article 20 paragraph 1 sentence 1 BayDiG: State authorities shall generally carry out suitable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separable parts thereof digitally.

Is there a possibility of digital administration reform in Korea’s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other words, is the public administration evolving from the ‘digital first’ service stage to the ‘digital only’ service stage? Regarding these questions, I think we are still in the ‘digital first’ service stage. The spec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electronic

* Prof. Dr. iur.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Hannam

processing under Article 7 of the E-Government Act means that Korean e-government has only reached the stage of ‘digital first’ servic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has not yet been legislated to the stage of ‘digital only’ services.

[Key Words] German Online Access Act, digital only, media self-determination, organizational authority, digital first, digital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